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적심사원 신설〉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45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6. 2. 4.
3. 회 부 일: 2026.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며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

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적법에 따른 신청·신고에 대한 심사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면서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사실 조사 및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함께 부여하려는 내용임(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25조의2, 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u>법무부장관</u> 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u>법무부장관과 국적심사원장</u> ----- ----- ----- -----.
② <u>법무부장관</u> 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u>법무부장관과 국적심사원장</u>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5조의2(국적심사원) ① 이 법에 따른 신청·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u>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u>장에게</u> 위임할 수 있다.	<u>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사원을 둔다.</u> <u>② 국적심사원에 원장과 국적심사관을 둔다.</u> <u>③ 국적심사원에 제1항에 따른 심사와 조사·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u> <u>④ 국적심사원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6조(권한의 위임) ----- ----- ----- ----- <u>장과 국</u> <u>적심사원장에게</u> ----- -----.
---	--

현행법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및 불행사, 국적 재취득·선택·이탈·보유·상실 신고 및 국적 판정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법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귀화 및 국적회복의 신청·허가를 바탕으로 한 국적업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2021년 21,160건에서 2025년 23,705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4년에는 24,955건으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처리 건수도 2021년 13,637건에서 2025년 15,38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국적 상실·이탈 처리 건수는 최소 25,002건(2025년)부터 최대 29,302건(2023년)이며 연평균 약 27,000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1] 연도별·유형별 국적취득 현황('26년 6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 종류	총 계		귀 화		국 적 회 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21년	21,160	13,637	18,091	10,895	3,069	2,742
2022년	22,789	13,291	18,079	10,248	4,710	3,043
2023년	23,745	14,549	18,736	10,346	5,009	4,203
2024년	24,955	14,615	19,470	11,008	5,485	3,607
2025년	23,705	15,381	18,623	11,344	5,082	4,037
2026년 1~6월	10,764	8,044	8,722	6,771	2,042	1,273

[자료 2] 연도별 국적 상실·이탈 처리 현황('26년 6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 종류	총 계	상 실	이 탈
2021년	25,579	21,271	4,308
2022년	28,686	25,425	3,261
2023년	29,302	25,399	3,903
2024년	26,494	22,887	3,607
2025년	25,002	20,988	4,014
2026년 1~6월	11,681	10,659	1,022

이처럼 귀화나 국적회복을 통한 국적취득 희망자가 증가하고 국적 상실·이탈자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국적심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법무부(국적과)의 이원적 심사구조로 처리되는 한계를 갖고 있고, 특히 국적 업무 처리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부내 조직(국적과)에는 2026년 4월말 기준 정원 12명에 현원 18명에 불과한 실정임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적심사업무 전담기관인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법에 따른 신청·신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적심사원장에게 위임²⁾하는 등 국적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또한, 현행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되는 국적업무 신청·접수 및 심사의견서 작성과, 법무부(국적과)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의견서 검토·확인 및 허가의 2단계 심사절차는 개정안의 시행 시 국적심사원의 전문적인 전담심사로 단일화되어 비효율적인 심사절차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국적업무 처리 기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을 살펴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일반귀화 19개월 이상, 간이귀화 12개월에서 19개월 이상, 혼인귀화는 10개월에서 19개월 이상, 특별귀화는 8개월에서 19개월 이상으로 많은 경우가 19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법

1) 법무부 국적과의 2026.4월말 기준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행정7	법무관	기간제 등
정 원	12	1	3	4	3	1		
현 원	18	1	3	4	5	1	1	3

2) 다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i)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국적회복 허가,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허가, ii) 예우가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공로자에 대한 특별귀화·국적회복 허가는 위임 제외

무부는 국적심사원 신설 시 귀화업무 처리기간이 12.5개월로 35.6%(−6.9개월)로 단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 기간 단축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³⁾.

[자료 3] 국적 심사 기간 현황('26년 4월 기준)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기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9개월 이상
간이귀화 (6조1항1~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9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이상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19개월 이상
혼인귀화 (6조2항)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19개월 이상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조사가 간소화 되는 경우		10개월 이상
특별귀화 (7조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9개월 이상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8개월 이상

* 심사기간은 당해년도 누적개념이며,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울러 기존의 법무부 내 국적업무조직(국적과)은 국적정책·제도 개발, 국적법령 입안, 국적심의위원회(우수인재, 국적이탈허가) 운영, 소속 기관·재외공관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보다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국적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4] 법무부(국적정책과) 및 국적심사원 업무 분장 예상

	법무부(국적정책과)	국적심사원
국적	▶ 국적정책 개발·추진	

3) 그 밖에도 법무부는 국적회복의 경우에는 11.2개월 → 5.6개월로 50%(−5.6개월), 국적이탈(신고) 경우에는 20개월 → 10개월로 50%(−10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법무부(국적정책과)	국적심사원
정책 추진	▶ 국적 법령의 입안 ▶ 소속기관 및 재외공관의 국적업무 관리·감독 ▶ <u>국적심의위원회의(제22조) 구성 및 운영</u> ▶ 특별공로자(유공자 후손 등) 및 우수인재에 대한 귀화·국적회복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8.15.) ▶ 해외 국적정책 수집·분석·연구 ▶ 국적 및 우수인재 유치 설명회 개최 ▶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국적법령 교육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신청 등 심사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제4조제3항(국민선서 및 증서 수여) 제7조제1항제2호(특별공로자 특별귀화) 제7조제1항제3호(우수인재 특별귀화)	제4조~제7조(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일반·간이·혼인·특별(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제외) 귀화 ※ 귀화면접관 선정 및 관리
		제8조(수반 취득)
	제9조제3항(국민선서 및 증서 수여)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제10조(외국국적포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11조의2제2항(외국국적포기)
		제11조(국적재취득신고)
		제13조(국적선택신고)
		제14조(국적이탈신고)
	제14조의2(국적이탈허가)	
		제14조의3(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4(국적상실 결정)	
		제15조제2항(국적보유신고)
		제16조(국적상실신고)
	제17조(관보 고시)	
		제20조(국적 판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우수인재, 이탈허가))	

다만,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국적심사원을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안 제25조의2제1항은 국적심사원이 국적법에 따른 신청·신고에 대한 심사 및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심판원⁴⁾ 및 특허심판원처럼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별개로 수행할 정도의 독립성을 필수요소로 하는 기관으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구성 인력과 관련해서 안 제25조의2제2항에는 국적심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적심사관의 역할이 모호한 상태이고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이 국적 심사 및 허가 등의 처분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적심사관의 자격, 업무 및 권한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인 「특허법」⁵⁾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특허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차이가 있음⁶⁾.

4)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각주 4) 「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참조

6) 「특허법」 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음으로, 국적심사원 신설의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정부조직법」⁷⁾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⁸⁾에 따라 대통령령의 직제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국적심사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의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소속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하고⁹⁾, 법무부 소관 규정에도 법무연수원과 같이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¹⁰⁾,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같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¹¹⁾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이 개별법 및 대통령령 모두 규정하는 경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7)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 6. (생략)

9) 소속기관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한 사례로는 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 제67조), 특허심판원(「특허법」 제132조의16), 국가인권교육원(「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 등이 있음.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 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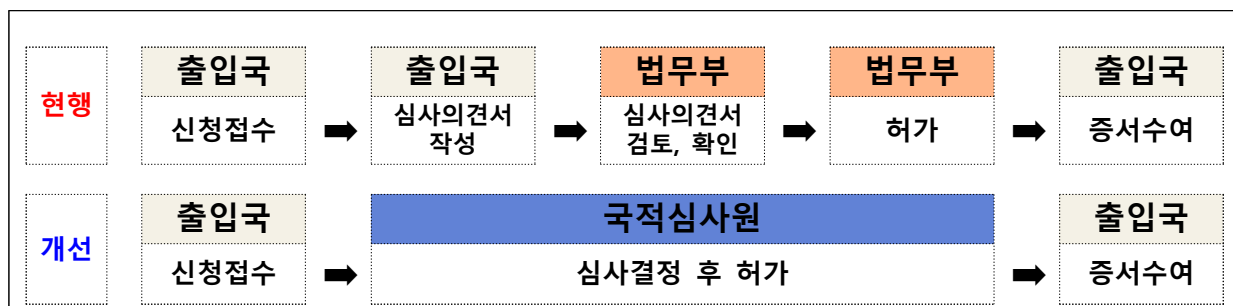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1)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보호명령서 발급기관과 집행기관의 실질적

우12)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만큼 국적심사원을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국적심사원의 조직·인력 및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적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적심사원을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국적법」상 신청·신고에 대한 처분 등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국적심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

[자료 5] 국적심사원 설치 전후 비교



인 분리,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의 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설치한 기관임.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이하 생략)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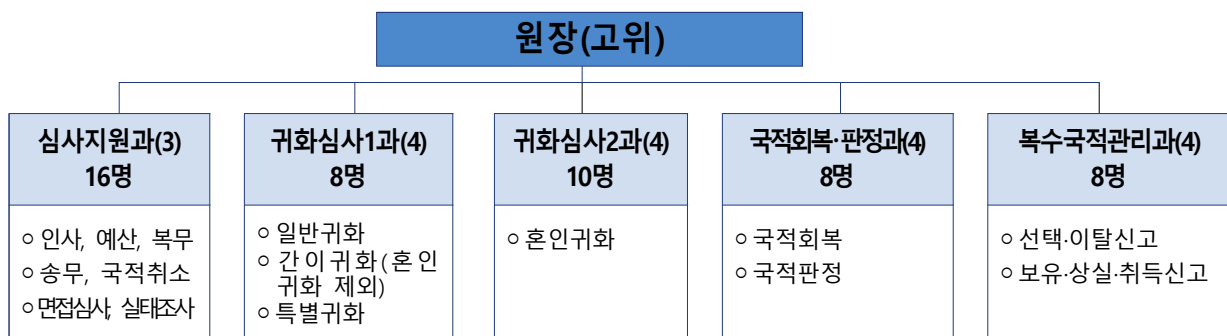
제3조(임무)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그런데, 국적심사원 신설에도 불구하고 [자료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인재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귀화·국적회복 등 국적 심사·허가 업무 일부를 법무부(국적과)에서 계속 직접 담당할 예정이라는 점, [자료 5]와 같이 신청·접수 및 증서 수여 등의 국적심사 업무를 위해 여전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창구로 활용할 예정인 점, [자료 6]과 같이 국적심사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기 보다는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증원된 법무부(국적과) 보조기관으로 이해된다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료 6] 국적심사원 조직 구성 예상안



※ 본부 국적과 복수국적 담당자 2명 복수국적관리과 이체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국적심사원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법무부내 국적과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내부에 국적 심사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적 심사의 효율성과 엄정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국내 귀환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신속한 국적 심사가 기대되고 국적 업무 중 동포에 관한 사항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은 상호협력을 위해 국적심사원 운영 시 동포사회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간의 공동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부처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전제로 심사원 설치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국적심사원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면서, 매년 연평균 39억원, 최근 5년간 약 198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자료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국적심사원 신설 (제25조의2)	3,868	3,827	3,938	4,051	4,168	19,852	3,970

주: 국회예산정책처, 본 추계 결과는 전입 및 신규증원 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 및 신규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057